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2. 15 선고 2021가단93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 18.

판 결 선 고 2022. 2. 15.

주 문

1. 피고와 C(D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8.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성남시 2021. 8. 10. 접수 제027544호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2021. 11. 8.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실질적인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기진석

별지